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27호)

- 2018. 10. 23.
- 재정건설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08.24. 서초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08.31.
- 다. 상 정 일 자 : 2018.09.10./10.23.
-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281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1회 1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재정건설위원회(1회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법정대리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서초구 소재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최충열)

본 조례안은 관내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법적근거

-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지원 의무 규정이 없고, 「소상공인 보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및 시행령2)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은 특별시나 광역자치단체 이상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법에서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3)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목(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아목(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되므로, 위생업소 관련 사무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

1) 제6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제4조(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실적 제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그 시행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항이라 할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4)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전국 약 72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바, 안 제2호에서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5) 중 구에서 지원하려는 영업소를 아래 표(밑줄)와 같은 부분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1호6)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4)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5)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 1. 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용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용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뚜껑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한편, 제6호에서 공중위생영업에 속하는 “숙박업”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7)에 해당하는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도 해당되는 관계로 이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위생업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공중위생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6)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16.2.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삭제 <2015.12.22.> ②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7)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19., 2015. 2. 3.>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키시설(遊技施設)이나 유키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키시설이나 유키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 안 제3조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으로 영업장, 조리장 및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과 그 외에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상담 및 교육,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안 제5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지원사업의 대상을 규정하였으나, 제3호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소의 영업주”라고 규정한 관계로,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영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할 것이고, 또한 안 제2조에서 “위생업소”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지원대상 영업소만으로 명확히 한정하여 정의한 부분과도 상충된다 하겠습니다.
- 제2항은,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강행규정으로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 관내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참고 : 관내 지원 대상 위생업소(2018.06.25. 기준)

식품접객업소														
계	일 반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 단 급식소	
	소계	한식	중국식	경양식	일식	분식	뷔페	호프 기타						
8,981	6,144	2,891	205	543	316	457	38	1,694	70	112	2,069	274	312	
식품제조·가공·판매, 건강기능식품업소														
계	식품제조가공업	주식판매 제조가공	유통전문 판매업	식품 소분업	식품 운반업	건강기능 식품유통업	건강기능식품일 판매업	기타식품 판매업						
3,508	97	635	417	127	18	216	1,953	45						
공중위생, 노래연습장														
계	공 중 위 생 업 소								노래 연습장					
	소 계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건물위생 관리업							
2,243	1,962	70	82	1,226	57	230	297	281						

위 현황표와 같이 우리구 관내의 지원대상 위생업소만 해도 약 1만 여개 이상이기 때문에 본 안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별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한 논란 발생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 제6조는,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 대상을 결정하는 규정이며,
- 안 제8조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고,
- 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는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적시하고 있고, 안 제18조에는 위생관련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 위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부의 비용추계서⁸⁾를 살펴보면,

2018년 소요예산 합계 4천만원, 2019년 소요예산 6천만원, 2020년 소요예산 6천 5백만원으로 추계하였는데, 본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및 간판 등의 “시설 개선사업”임에도 비용추계는 식품위생 진단 및 정보 공개, 외식업경영아카데미 사업, 위생업소 선진지 견학 등의 예산만 책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이 목적하고 있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아울러 “위생업소 선진지 견학”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⁹⁾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¹⁰⁾에 적합해 보

8)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7. 14.]

9)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용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이지 않으므로, 기금보다는 일반 회계에서 예산 편성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 참고 :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소 계		40,000(기금)	60,000	65,000
세출	외식업경영아카데미 운영	15,000(기금)	30,000	30,000	75,000
	배달음식점 진단 및 컨설팅비	20,000(기금)	20,000	25,000	65,000
	위생업소 선진지 견학	5,000(기금)	10,000	10,000	25,000

■ 한편, 경기부진으로 자영업 폐업률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폐업률이 높은 업종은 음식점으로, 올해 들어 인건비, 임대료 등 주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폐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자영업 폐업률이 87.9%로 2016년보다 10.2% 증가하였고, 특히 지난해 음식점 폐업 신고 건수는 16만 6,751건, 신규 등록 건수는 18만 1,304건으로, 폐업률이 92%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서초구 관내 음식점 폐업률을 살펴보면, 2018년 8월 현재 신규 대비 폐업률은 132%에 달하고 있습니다.

※ 참고 : 서초구 내 음식점 폐업률

(단위 : 개소)

연도별	업소 수	신규	폐업	폐업률(%)
2018.8	8,502	1,260	1,663	132.0
2017	8,887	2,076	1,922	92.6
2016	8,714	2,175	2,015	92.6
2015	8,526	2,086	1,889	90.5

■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운영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각한 폐업률을 보이고 있는 일반음

10)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7.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8.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생활 정보센터 사업 9. 일반·휴게음식점의 위생관련시설 및 집기류 지원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10.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사업 (신설 2013.04.04.) 11.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식품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식점 등 위생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점진적인 예산의 확충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본 조례안이 목적하고 있는 핵심 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9월 10일 제1차 심의]

질>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근거한 비용추계서 작성과 관련하여

- ① 제출한 비용추계서는 외식업아카데미운영, 배달음식점 진단 및 컨설팅비, 위생업소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만 제출하였고 핵심사업인 영업장, 조리장 및 간판 등 시설 개선에 대한 비용추계는 없는데, 시설개선사업은 최소한 매년 수십억원 이상이 확보되어야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인데?

답 : 시설개선은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소음,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선별해서 지원할 예정임

- ② 시설개선사업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매년 하고 있으므로 누적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다시 제출할 의향은?

답 : 본 조례안이 부결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대책인 만큼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보완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겠습니다

질> 본 조례가 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완료하기도 전에 외식업경영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이며, 시범사업은 부수사업이 아닌 핵심사업으로 해야 할 것

답 : 이번은 시범사업으로 15차수를 진행할 것이며, 처음부터 시설개선자금으로 몇 억을 잡아놓으면 예산편성과 의회 승인에서 힘든 부분이 있음. 2020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 발의(발의자 : 최원준 위원)]

(재청하는 위원 있음 → 의제 성립)

【10월 23일 제2차 심의】

질> 외식업경영아카데미의 실효성에 대하여

- ①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외식업 경영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5.8%에 불과했으며, 정부 지원 교육제도의 문제점으로 장시간 교육 참여가 어렵다(31.5%), 교육장 접근성이 문제(29.8%), 현장과 교육 내용의 괴리(20.9%) 등을 꼽았는데, 자생력 위한 교육이 시급하지만 현재의 교육은 형식적이고 참여율도 저조하다고 하는데, 1기 과정 시범 실시 후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답 : 올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132%에 이르고 있어 지원이 시급하며, 의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시설 개선 등이 가능함

- ② 외식업경영아카데미는 100m²이하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카데미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특정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세 업소를 위주로 지원 및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답 :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지원하고, 우리 조례는 지원 대상을 어려운 업소 위주로 할 것임

질> 제4조제5호는 기금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선진문화체험은 현재 기금에서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답 : 현재 외식업협회는 선진지 견학의 경비 절반을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미·이용협회, 숙박협회 등은 자비로 하고 있는데 이들 협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임. 기금이 고갈될 경우에 대비하여 조례에 포함시킨 것임

질> 서울시와 중소기업중앙회가 100% 지원하여 소상공인 리더스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영세하다 보니 교육받을 시간을 내기 어려워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교 검토하여 대안마련이 필요한데?

답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나, 소상공인 리더스아카데미는 외식기업 관련 교육은 아니고 분야가 다름. 외식업경영아카데미는 조리, 개발, 외식트렌드 위주로 강의함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사구정리내용 : 없음